

대학원 조소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소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조소학과 소속교수들은 조소학과 석사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학생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 학기 이전에 전공별교수들의 의견을 전공 운영위원회와 함께 수렴 및 검토하여 주임교수가 대학원에 개편요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과목개설) 학기당 전공 필수과목 및 전공 선택과목 총 3과목이하로 개설한다. 단 논문 연구지도 과목은 2학기부터 매학기 1과목씩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강사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 ① 원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 있는 정교수로 한다.
- ②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분.

③ 특별한 경우 학위와 상관없이 전공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받는 자.

(대학원 학칙 11장 제 34조)

제 11 장 논문지도교수의 선정, 학위 논문의 작성, 제출 및 심사

- 논문지도교수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일정기간 논문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학기말에 전공 및 집중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교수로 지도를 받고자 하는 수의 승인을 받아야 편입학의 경우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편입학된 학기초로
- ③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전임교원으로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않는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에 출강하는 강사로 할 수
- ④ 학생이 특별히 지도교수로 원하는 교수가 없거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의 교수회의에서 배정할 수
- ⑤ 지도교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도학생수를 유지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 ⑥ 지도교수의 유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 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도교수를 할 수
- ⑦ 학생의 학위논문주제가 여러 전문영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에 대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할 수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청구전에 들어갈 작품중 5개 이상의 작품이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판단에 있어 패스 되었을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해 준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 (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학위작품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학과 내규로 문서화 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선택한 취득방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

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원생은 과정 이수 중 제 2차 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원생은 그에 앞서 지도 교수에게 “연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품논문형식의 연구계획서는 발표회를 통하여 제출 및 심사를 받는다.

제14조 (예비발표) 학위논문 작성이 완료되어 심사를 받고자 하는 원생은 논문제출 조건을 갖춘 이후부터 예비발표를 신청할 수 있고, 전공교수와 재학생들 앞에서 공개 예비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발표의 일정은 논문 발표자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전공교수들과 재학생 전원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조소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3인을 선정한다. 외부인사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전공분야 최고전문인으로 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